

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

1. 상호
2. 소재지
3. 대표자의 성명
4. 사업자등록번호

위의 사업자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증명합니다.

1. 서비스 제공자
2. 서비스 이용기간
3. 서비스 제공조건
4. 서비스 등록번호
5. 서비스 이용 확인 연락처

년 월 일

서비스 제공 사업자명
또는 관련 단체명

직인